

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(안)

의안번호	142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. 9. 22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 안 이 유

- 공유재산으로서 현재까지 장림1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건물노후 등으로 사하경찰서에서 멸실승인을 요청
-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

2. 주 요 내 용

- 우리구 소유로 된 건물(사하경찰서 장림1파출소)이 74. 2. 6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내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전면적인 개축이 요구되는 바, 사하경찰서에서 노후파출소 개축계획에 의거 자체 예산으로 개축코자 용도폐지(멸실) 승인 요청

3. 재산의 표시

소 재 지	건물 사용부서	건물, 연면적(m ²)	준공년월일	소 유
장림동 325-11	장림1 파출소	95.87	74. 2. 6	사하구

4. 신 청 근 거

-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
(※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확충계획(안))